

# 국내 은행신탁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성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서윤석(徐胤碩)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우리나라 신탁업의 발전 방안 |
| II. 국내 신탁시장의 현황 및 성장 과정 | 참고문헌                |
| III. 일본 신탁업의 성장 과정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신탁, 자본시장통합법, 고령화, 금전신탁, 재산신탁, 포괄신탁, 매월분배형펀드, 유언신탁, 지적재산신탁, 온실가스배출권신탁, 종합재산신탁, 퇴직연금

## 국문요약

국내 신탁산업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탁업에 있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경쟁의 심화로 시장이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 전환기를 맞이한 국내 신탁업은 그동안 은행 수신의 보조 수단으로서 성장했으나 제도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이 늦춰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법을 개정하는 등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해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신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규제완화와 같은 세제 개선 등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신탁과 종합재산신탁의 적극적인 영입이 필요하다. 매월분배형상품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신탁과 퇴직연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PB와 협력하여 고객의 자산관리컨설팅에 신탁상품을 적극 소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근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I. 서론

국내 신탁업은 입법 예고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권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재편되며 IB(투자은행)업무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의 투자관련 분야인 신탁업에 있어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가능케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쟁의 심화로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2004년 7월부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이 금지되면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금융업무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면서 은행 이외의 금융권에서도 신탁업 경영을 확대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 운용자산의 중장기화가 진행되면서 단순한 소매금융업무에서 자산운용 위주로 전환이 예상되어 신탁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는 신탁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법을 개정하는 등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신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으며 상품 및 운용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6년 12월 신탁업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었다. 신탁시장도 최근 5년간 14.1%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포괄신탁과 금전신탁의 판매비중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상품에서는 매월분배형 펀드, 유언신탁, 지적재산신탁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산운용 방법도 대체투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신탁사업은 성장이나 퇴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신탁업을 시작해 성장 중이며 최근 신탁관련 제도 개혁을 단행한 일본의 성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신탁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국내 신탁시장의 현황 및 성장 과정

### 1. 국내 신탁시장 현황

#### 가. 국내 신탁의 역사

국내 신탁업은 개인신탁으로 시작한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영업신탁으로 시작되었

다. 1910년 일본인에 의해 가쓰모토(藤本) 합자회사가 처음으로 신탁업무를 시작한 이래 1931년에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을 중심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신탁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일제시대때 일본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명분으로 강제저축을 강요받아 군비를 충당해 주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美 군정당국으로부터 은행업무 겸영을 인가받아 상호를 조선신탁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한국상공은행과 합병하면서 흥업은행(舊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신탁업을 지속해온 조선신탁은행은 1960년 7월에 신탁업무 면허 취소 명령을 받으면서 신탁업을 중단하였으나, 1961년 12월에 신탁법 및 신탁업법이 제정되면서 신탁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1962년 11월에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서울)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면서 5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가 1968년 12월에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면서 5개 은행의 신탁업 겸업이 폐지되었는데, 이후 금융자유화 및 은행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1983년 5월 지방은행, 1984년 2월 시중은행, 1984년 3월 한미은행, 1985년 3월 외환은행, 1989년 국책은행 등으로 신탁업 겸업이 다시 허용되었다.

중장기 설비자금의 공급 및 은행 수신의 보조수단으로서 금전신탁 위주로 발전해온 국내 신탁업은 외환위기 이후 신탁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 2004년 4월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이 중단되면서 급속히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당국은 침체된 신탁업을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2004년 12월에 신탁업법을 개정하여 종합재산신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종합재산신탁제도는 단일 계약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無體)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하여 통합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신탁제도이다. 그러나 단독운용시 발생하는 효율성과 관리비용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목적이 같은 신탁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운용한 후 투자성과를 배분하는 공동운용기금(Collective Investment Fund; CIF)<sup>1)</sup> 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신탁시장의 재활성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2005년 6월에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신탁업 겸업 허용을 골자로 한 신탁업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국내 신탁업은 관련 법률이 은행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은행에게만 겸영이 허용되었다.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은행에만 적용이 배제되고, 은행 외의 금융기관에는 적용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신탁업 겸업이 허용됨과 동시에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In-house 형태로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신탁업을 둘러싼 경쟁은 과거 은행간 경쟁에서 은행-증권-보험간 경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1) 공동운용기금은 고객들이 위탁한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종합재산신탁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개별 신탁재산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동운용기금의 불허용으로 종합재산 신탁의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표 1] 국내 신탁업의 제도 변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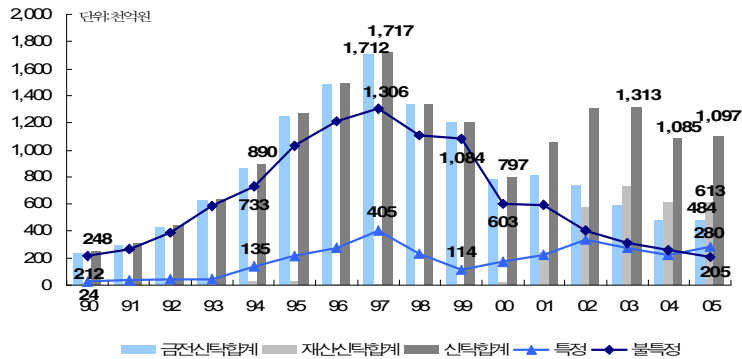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1910.03 월	- 일본인에 의해 가쓰모토(藤本) 합자회사 설립
1931.01 월	-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을 중심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 설립 · 일제시대때 일본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명분으로 강제저축을 강요받아 군비 충당 역할 수행
1946.10 월	- 美 군정당국으로부터 은행업무 겸영을 인가받아 조선신탁은행으로 상 호 변경
1960.07 월	- 한일은행(조선신탁은행+한국상공은행) 신탁업무 면허 취소로 신탁업 중단
1961.12 월	- 신탁법 및 신탁업법 제정으로 한일은행 신탁업 재개
1962.11 월	-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서울) 신탁업 겸영 허용
1968.12 월	- 한국신탁은행 설립으로 5개 은행 신탁업 겸업 폐지
-	- 지방은행(1983), 시중은행 및 한미은행(1984), 외환은행(1985), 국책은행 (1989) 등으로 확대
2004.04 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불특정금전신탁 신규수탁 금지
2005.04 월	- 종합재산신탁제도 시행
2005.6월	- 증권사 및 보험사 신탁업 겸업 허용
2006.02 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 : 금융투자회사 In-house 형태 신탁업 겸 영 허용

#### 나. 은행신탁의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신탁업은 2005.6월 이전까지 관련 법률 제약하에 은행에서만 영위되어왔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 신탁업은 중장기 설비자금의 공급 및 은행 수신의 보조수단으로서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말 24.8조원에 불과하던 국내 은행신탁 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말에 171.7조원을 돌파하며 7년 동안 연평균 32%가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대기업 부도사태 등을 겪으면서 운용자산이 부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신탁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면서 2000년말 신탁시장 규모가

1997년말 대비 54%가 감소한 79.7조원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3년말에 131.3조원으로 반등하였으나, 2004.4월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이 금지되자 110조원대 이하로 재차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1> 국내 은행신탁 규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1999년 이전 자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1999년 이후 자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1) 금전신탁

국내 신탁업은 신탁유형 중 금전신탁 위주로 성장해왔으며, 특히 금전신탁 중에서는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주류였다. 1990년말 23.6조원 규모였던 금전신탁은 1997년말에 171.2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신탁시장에서 약 98%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금전신탁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금전신탁이 재산신탁에 비해 중장기 자금의 손쉬운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 이후 은행의 수신확대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금리경쟁이 심화되었고, 실적에 연동되는 신탁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확정금리상품 비중이 과다했으며, 대기업 부도 사태 등으로 운용자산이 부실해지면서 암묵적으로 원리금이 보장된 신탁상품이 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전환되자 신탁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졌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은행신탁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와 영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1997년을 기점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 2005년말 현재 48.4조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금전신탁내 은행구분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이 70%대 후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5대은행의 비중은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67%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2003년도에 LG카드 등 카드사 및 캐피탈사의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시중 5대은행이 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시중 5대은행의 신탁자금이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탈, 2003년말에 63%로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중 5대은행의 집중도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비중이 증가세로 반전된 반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비중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금전신탁내 은행구분별 비중 추이** (단위:%,억원)

구 분	일반은행	시중은행	시중 5대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금전신탁 합계
1999	82.2	77.3	67.5	4.9	17.8	1,198,800
2000	80.3	76.8	67.0	3.5	19.7	777,626
2001	81.1	76.9	67.3	4.3	18.9	812,782
2002	78.8	73.8	64.2	5.0	21.2	736,775
2003	76.2	71.1	62.6	5.0	23.8	581,295
2004	79.6	74.1	67.1	5.5	20.4	478,993
2005	82.1	77.0	72.4	5.1	17.9	484,480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시중 5대은행은 국민(주택 포함), 신한(조흥 포함), 우리, 하나(서울 포함), 외환 특수은행은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축협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내 신탁업은 금전신탁 중 불특정금전신탁이 주도해온 시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불특정금전신탁이 전체 신탁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던 상황이 2001년 이후부터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났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시행 여파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이 금지되자 시장규모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2005년말 현재 전체 신탁시장에서 불특정금전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머물러있으며, 신탁업 개시 이래 처음으로 특정금전신탁 규모에 역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탁시장 전체가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이탈한 자금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시장 자체를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은 공동운용기금(CIF) 허용 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거나 운용자산 부실로 실추됐던 對고객 신뢰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증가세로 전환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금전신탁내 종류별 규모 추이** (단위:억원)

구분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금전신탁 합계		전체 신탁 합계
1999	114,374	9.5%	1,084,426	90.1%	1,198,800	99.6%	1,203,679
2000	174,724	21.9%	602,902	75.6%	777,626	97.6%	797,104
2001	224,667	21.3%	588,115	55.8%	812,782	77.2%	1,053,232
2002	336,679	25.7%	400,096	30.6%	736,775	56.3%	1,307,968
2003	273,526	20.8%	307,769	23.4%	581,295	44.3%	1,312,615
2004	220,912	20.4%	258,080	23.8%	478,993	44.2%	1,084,761
2005	279,830	25.5%	204,650	18.6%	484,480	44.2%	1,097,322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각 비율수치는 전체 신탁 합계 대비 각 부분별 비율을 의미

## 2) 재산신탁

국내 신탁업은 초기에 불특정금전신탁을 위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재산신탁 부분은 극히 미약하였다. 재산신탁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탁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불안 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런 요인들에 의해 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과는 달리 재산신탁 부분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신탁이 발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국내 신탁시장이 2000년을 기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말 까지만 해도 전체 신탁시장에서 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4%(0.5조원)에 불과하였지만, 2001년말에 22.8%(24.0조원)를 돌파하며 처음으로 두자리수 점유 비중을 기록한데 이어, 1년이 경과한 2002년말에는 43.7%(57.1조원)로 전년대비 약 2배가 급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2005년말에는 55.8%(61.3조원)를 돌파하며 금전신탁 규모마저 뛰어넘으며 국내 신탁시장의 주류로 부상하였다.

<표 4>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 규모 추이

(단위:억원)

구분	금전신탁		재산신탁		전체 신탁 합계
1999	1,198,800	99.6%	4,879	0.4%	1,203,679
2000	777,626	97.6%	19,478	2.4%	797,104
2001	812,782	77.2%	240,450	22.8%	1,053,232
2002	736,775	56.3%	571,193	43.7%	1,307,968
2003	581,295	44.3%	731,319	55.7%	1,312,615
2004	478,993	44.2%	605,769	55.8%	1,084,761
2005	484,480	44.2%	612,843	55.8%	1,097,322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각 비율수치는 전체 신탁 합계 대비 각 부분별 비율을 의미

은행구분별로 살펴보면, 1999년까지는 재산신탁을 시중은행들만 취급하였다가 2000년에 들어 특수은행 중 산업은행이 금전채권신탁 부분을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기업은행이 유가증권신탁 부분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간 양자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후 2004년에 지방은행들도 재산신탁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지만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대비 취약한 영업역량과 고객기반으로 인해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표 5> 재산신탁내 은행구분별 비중 추이

(단위:%,억원)

구 분	일반은행	시중은행	시중 5대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재산신탁 합계
1999	100.0	100.0	70.0	-	-	4,879
2000	73.4	73.4	55.3	-	26.6	19,478
2001	74.2	74.2	74.2	-	25.8	240,450
2002	76.1	76.1	73.9	-	23.9	571,193
2003	80.1	80.1	65.9	-	19.9	731,319
2004	70.5	70.2	57.2	0.3	29.5	605,769
2005	67.0	65.8	58.8	1.2	33.0	612,843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시중 5대은행은 국민(주택 포함), 신한(조흥 포함), 우리, 하나(서울 포함), 외환 특수은행은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축협

재산신탁내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이를 관리 또는 추심하고 신탁 만기시 추심대전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채권신탁이 약 6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채권신탁 규모는 1999년부터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2003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약 550% 정도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탁자의 경우 소액의 다수 채권을 위탁하는 대신 거액의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수탁자의 경우 자금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신탁보수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거래였기 때문에 금전채권신탁 규모가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6> 재산신탁내 종류별 규모 추이

(단위:억원)

구 분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동산부동산신탁	재산신탁 합계
1999	2,347	2,530	2	4,879
2000	13,621	5,855	2	19,478
2001	228,199	11,044	1,207	240,450
2002	514,757	39,866	16,571	571,193
2003	623,719	42,530	65,070	731,319
2004	480,585	45,693	79,490	605,769
2005	415,641	62,307	134,895	612,843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2002년 이후 동산부동산신탁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택지개발이다 뉴타운건설이다 등등 하면서 부동산 개발이 활기를 띠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펀드시장에서 부동산펀드 및 선박펀드 등이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동산부동산신탁 규모가 급성장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부동산신탁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경매금지로 신탁재산의 안정성 보장과 함께 신탁재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로 세금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계약, 권리관계, 세무 및 법률 등을 신탁회사나 경영회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편리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 Ⅲ. 일본 신탁업의 성장 과정

#### 1. 법제도의 진행 과정

일본의 신탁은 미국의 신탁제도가 메이지(明治) 시대 후반에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법률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메이지 33년(1900년)에 제정된 일본흥업은행법(日本興業銀行法)이었지만, 신탁업무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 38년(1905년)에 담보부사채 신탁법이 제정되면서 은행들이 담보부사채 신탁업무를 시행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 산업은 청일 및 러일 전쟁 등을 계기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담보부사채 신탁의 제도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신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신탁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탁 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타이쇼(大正) 11년(1922년)에 신탁법과 신탁업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신탁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신탁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급속하게 발달하였는데, 쇼와(昭和) 27년(1952년)

에 대부신탁법이 제정되면서 산업계에 대한 장기자금의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비교적 높은 금리의 안정된 장기저축의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후 적격퇴직연금신탁(1962년), 후생연금기금신탁(1966년), 재산형성신탁(1972년), 특정증여신탁(1975년), 공익신탁(1977년)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헤세이(平成) 3년(1991년)에 국민연금기금신탁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DC형 및 DB형 신탁이 시작되었다.

헤세이(平成) 4년(1992년)에 금융제도 및 증권거래 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금융제도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은행 등은 증권 자회사 및 신탁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그리고 증권회사는 은행 자회사 또는 신탁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他 업종의 업무분야에 서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신탁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1993년에 신탁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탁 자회사나 지역금융기관이 행하는 신탁 업무에 대해서는 1998년 3월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된 2002년 2월까지 일부 신탁 업무 및 겸영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되었다. 2001년 2월에 겸영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의해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농림중앙금고에 의한 신탁 업무의 진입이 가능해 지게 되었으며, 신탁대리점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재개정에 의해 도시은행 등으로 확대되었다.

#### <표 7> 일본 신탁제도 관련 변천 과정

시 기	법 제도	내 용
1992년	금융제도 개혁법	은행은 증권·신탁자회사를 통해 타 업종 진출 가능
1993년	신탁대리점제 도입	지방 고객들에게도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2001년	신탁 겸영법	도시·장기신용은행, 농림중앙금고 등에도 신탁업허용
2004년	신탁업법 개정	비금융업자도 신탁업 허용
2006년	신탁업 개정	사업신탁, 목적신탁, 자기신탁 등 신 신탁사업 가능

## 2. 상품의 판매 추이

일본의 신탁은 크게 개인용과 법인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용 상품으로는 금전신탁, 대부신탁, 투자신탁, 유언관련 업무 및 부동산의 신탁·부동산 업무 등이 있고, 법인전용 상품으로는 연금신탁, 재산형성신탁, 자산유동화의 신탁(금전채권신탁 및 부동산의 신탁), 증권신탁(특정 금전신탁 등), 유가증권의 신탁, 증권대행 업무 및 부동산의 신탁·부동산 업무 등이 있다.

포괄신탁 부분을 포함할 경우 일본 신탁시장 규모는 2005년 9월말 기준 ¥559.6조으로 1990년말 대비 약 ¥369.6조, 195% 증가였다. 1990년 이후 2005년 9월까지 일본 신탁시장은 연평균 6.4%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포괄신탁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9.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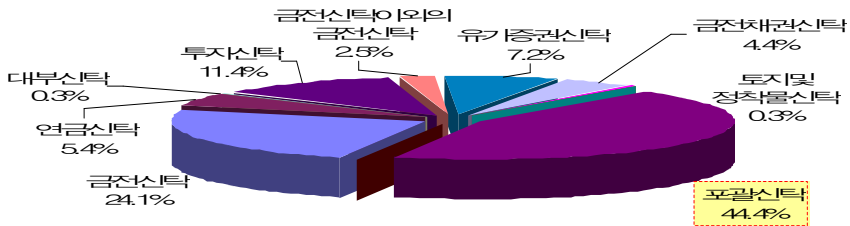
<표 8> 일본 신탁시장 규모 추이

(단위:억엔)

구분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전신탁	348,244	604,072	990,480	1,058,435	1,033,063	1,142,681	1,178,777	1,751,886
금전이외 금전신탁	271,170	194,700	164,763	171,518	177,634	173,791	184,352	179,191
연금신탁	217,143	281,031	371,498	372,084	368,603	338,052	359,399	392,325
재산형성 신탁	647	677	620	568	564	552	504	464
대부신탁	482,342	485,283	180,969	74,684	53,436	40,363	31,051	22,751
투자신탁	487,643	429,990	588,146	472,828	521,394	600,830	715,641	829,279
유가증권 신탁	63,001	47,293	296,722	365,453	413,120	423,810	511,011	523,526
금전채권 신탁	4,492	9,334	95,373	169,109	193,007	222,638	269,142	318,540
동산신탁	6,525	1,634	1,208	1,575	1,236	678	343	452
토지 및 정착물신탁	11,138	13,137	16,990	20,020	22,599	28,407	25,702	22,679
포괄신탁	7,394	18,643	741,868	1,597,049	2,138,128	2,285,913	2,721,862	3,222,137
신탁합계	1,899,810	2,085,855	3,448,801	4,303,433	4,922,914	5,257,890	5,997,978	7,263,447

자료 : 사단법인 신탁협회(Trust Companies Association of Japan)

<그림 2> 일본 신탁상품별 판매 비중



주:2006년 12월 현재 자료 : 일본신탁협회

신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신탁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신탁(유가증권신탁 및 금전채권신탁)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는 달리 금전신탁 위주로 성장해왔다. 1990년 말까지만 해도 투자신탁을 제외할 경우, 대부신탁(Loan Trusts)이 25.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994년 이후 금전신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9월말 현재 포괄신탁이 전체 신탁시장의 44.1%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신탁이 20.4%,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신탁이 8.8% 등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에 들어 기업신탁의 일종인 유가증권신탁 및 금전채권신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신상품 개발

일본 신탁업의 양적인 성장 이외 질적인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을 알아보자.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전신탁이나 재산신탁과 같은 일반적인 신탁상품 이외 매월분배형펀드, 유언신탁, 지적재산신탁, 배출권신탁상품 등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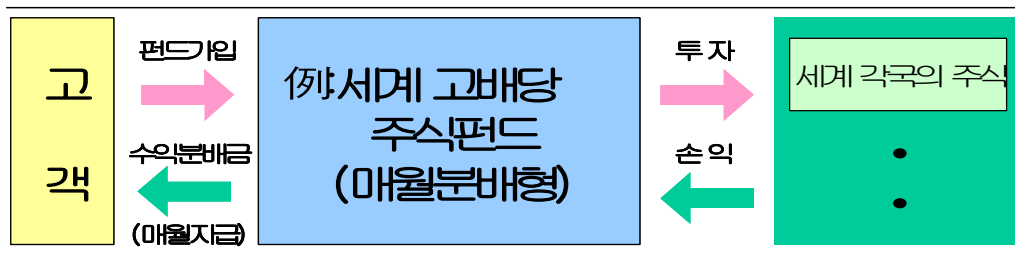
#### 가. 매월분배형펀드

1997년 10월 개발된 펀드로 운용대상이나 운용방법에서는 일반펀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분배금을 매월 지급한다는 점이 기존 펀드와 차별화된 부분이다. 즉, 퇴직금 등 목돈을 펀드에 맡기면 매달 펀드 수익의 일정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펀드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익을 12등분해서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퇴를 앞둔 퇴직자,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나 현금 수입이 없는 투자자들이 대량 구입하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재단, 조합, 기금 등에서도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인 금리의 저하를 배경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월분배형 펀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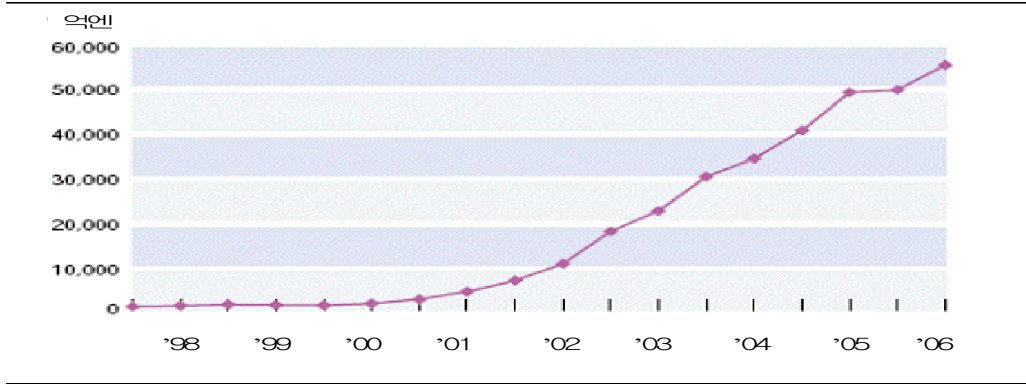
2007년 1월 현재 매월결산형 펀드의 순자산은 35조엔으로 전체 공모펀드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순자산 잔액 펀드 상품 10위 중 5개가 매월분배형펀드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매월분배형 펀드의 구조



자료:nikko asset management

<그림 4> 국제투신의 Global Sovereign Fund(매월분배형)의 순자산 총액 추이



자료 : 국제투신투자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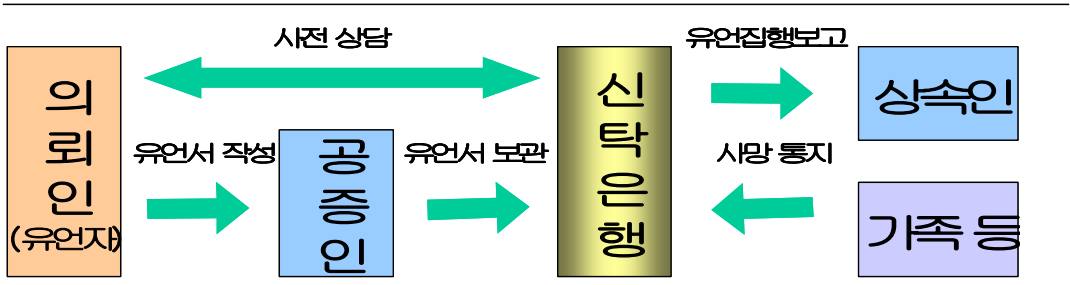
나. 유언신탁

유언신탁은 신탁은행이 유언서 작성 등에 대해 조언하고 완성된 유언서의 공증·보관·집행 등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의뢰자 사망 이후 재산을 조사하여 예금·적금·부동산 등의 명의변경을 대행하면서 유언내용에 근거해 유산을 배분한다. 현재 신탁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유언신탁의 종류는 유언장의 보관서비스만 제공하는 신탁과 유언장의 보관 및 집행을 모두 포함하는 집행부신탁의 2종류가 있다.

이 상품의 도입배경은 고령자의 경우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산가가 많아 상속세 등 절세에 관한 재무상담도 많지만, 최근에는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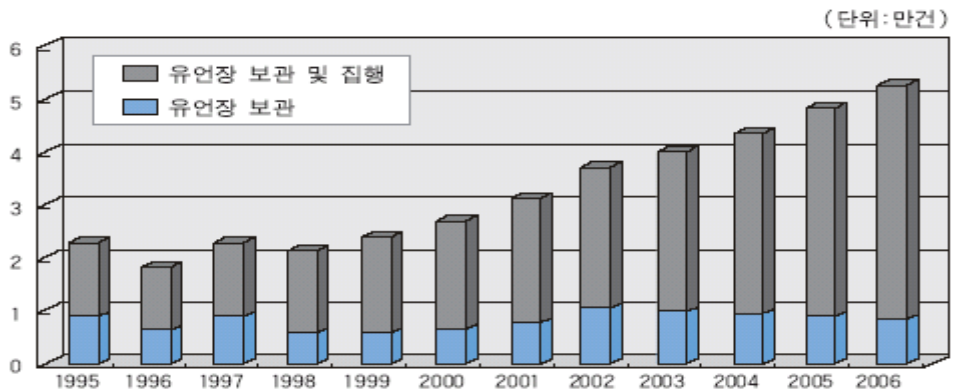
일본 신탁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3월말 현재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미즈호신탁은행, 스미토모신탁은행 등 7개사의 유언신탁 취급건수가 총 5만 2,7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6년 도입 이후 약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5> 유언신탁의 구조



자료 : 일본 신탁협회

<그림 6> 일본 신타은행의 유연신타 취급 건수 추이



주 : 각 연도의 3월말 수치      자료 : 일본 신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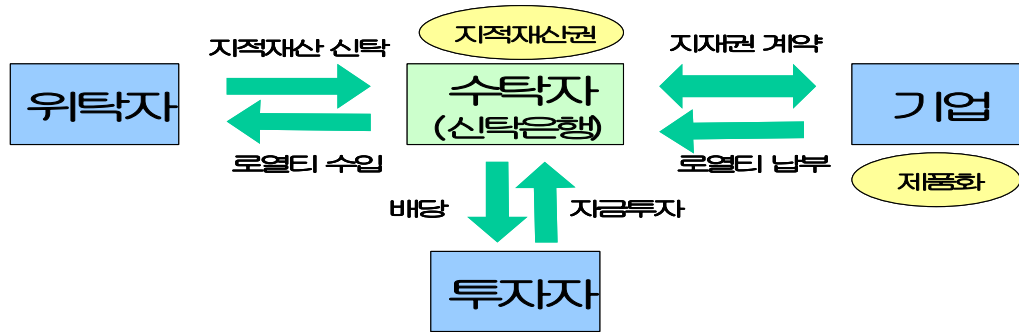
#### 다. 지적재산신타

지적재산신타는 2004년 12월 신타업법의 개정으로 지적재산권도 신타상품 대상으로 허용되면서 상품으로 등장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은 신타은행과 신타계약을 맺으면서 지적재산권을 위탁한다. 위탁받은 신타은행은 기업에게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며 구매한 기업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지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도 한다.

2005년 3월 미쓰비시UFJ신타은행이 특허권 신타업무를 최초로 시작했다. 미쓰비시UFJ신타은행은 도쿄내 오타구(大田區)의 산업진흥협회와 제휴하여 구내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지적재산신타계약 체결했다.

2006년에는 알프스 전자와 특허권 신타계약을 맺었으며 2007년 1월에는 중소 제조업체인 SANKI가 가지고 있는 가스호스연결시에 사용되는 부품관련 특허를 수탁했다.

<그림 7> 지적재산신타의 구조



자료 : 일본 신탁협회

### 라. 온실가스배출권신탁

2005년 2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에 관한 교도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가별 연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국가별, 기업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배출권 거래는 각국의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국가(중국, 인도)나 기업(철강, 전력회사)은 배출권이 남는 국가 등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삭감분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2007년 2월 16일 주오미쓰이신탁은행에서 배출권신탁상품을 출시했다. 주오미쓰이신탁은행은 배출권을 신탁재산화 하기 위해 1월에 금융청으로부터 인가를 취득해 2월부터 신탁상품 판매 개시했다. 4월 4일에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서도 배출권신탁상품을 개발하여 대량의 가스배출권이 필요한 전력회사나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현재 미즈호신탁은행과 스미토모신탁은행에서도 상품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 중이며,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시미즈(清水)건설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신탁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IV. 우리나라 신탁업의 발전 방안

### 1. 신탁업의 제도적 보완이 선결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신탁법과 신탁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신탁업 진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상품과 신탁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를 포함한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은행권의 용역의뢰에 의해 조세연구원에서 신탁세제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은행신탁업 규제  
의 완화가 필요하다. 은행신탁업은 금융투자회사의 신탁업과는 달리 기관별 규제와 기  
능별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규제의 차별화 소지가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재무 및 건전성 기준 등 규제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금전신탁상품의 공동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  
령(§2②)에서는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40/100 이하인 경우 재산신탁  
내의 소액신탁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운용(불특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동운용 가능대상에  
금전신탁을 포함하여 금전신탁의 소액자금 운용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신탁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전신탁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2. 기업관련 신탁영업의 확대가 필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많은 기업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기  
업신탁(corporate trust)영업을 확대해야 한다. 신탁업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신뢰성  
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시 되며 이러한 점에서은행은 오랜 기간 기업과 거래를 해온 강  
점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기업발행 유가증권의 ‘사후관리업무’, 기업 간의  
거래시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기초로 한 ‘금전채권관리’, 기업의 기업설비 등을 수탁 받  
아 임대·매각하는 ‘부동산신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신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가증권신탁’, ABS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의 수탁자로서의 ‘대리업무’, 기업으로부터 각출된 연금을  
종업원의 퇴직 후 복지를 위해 자금의 법적 소유자가 되어 관리하는 ‘기업연금신탁’ 등  
기업관련 신탁영업도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퇴직연금신탁’은 향후 시장의 확대<sup>2)</sup>가 예상되며, 수탁받은 회사 종업원의  
부수적인 금융거래 취급을 포함하여 이들의 종합적인 재산관리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  
는 유효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중소기업 고객이 많아  
향후 대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퇴직연금 마케팅을 펼쳐야 할 과제가 있다.

## 3. 종합재산신탁의 장기적인 대비 필요

개인의 종합적인 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은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  
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세제문제 등으로 인해 상품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

---

2) 퇴직연금규모는 2010년 약 44조원, 2050년 2천110조원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증권연구원)

재산신탁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원노출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관리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의 일생에 걸쳐 발생하는 저축, 대출, 부동산 관리 및 운용, 유산처리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조직)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축으로써 종합재산신탁 영업을 적극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자산의 88.6%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의 우량고객이 주로 40~50대의 부유층으로 보수적이며 안정성을 추구하며, 재산증식 보다는 상속·증여 등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재산신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상품개발 능력 강화

현재 당행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의 신탁업은 제도적·사회적·문화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상품개발과 상품의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 매월분배형의 경우 기존의 연금상품과 차별성을 두기 어렵고 투자신탁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유언신탁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는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으며, 세원 노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sup>3)</sup>.

그러나 향후 금융환경이나 신탁상품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단순 매매거래 위주에서 자산운용 중심으로 이동할 전망이므로 이를 대비한 상품개발의 능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고령화, 자동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신탁상품도 경제가 성숙화 되면서 재산관리형으로 트렌드가 바뀌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

또, 신탁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수탁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해 다수의 전문인력 육성이 필수적. 특히 신탁사업단 내에 자본시장통합법을 대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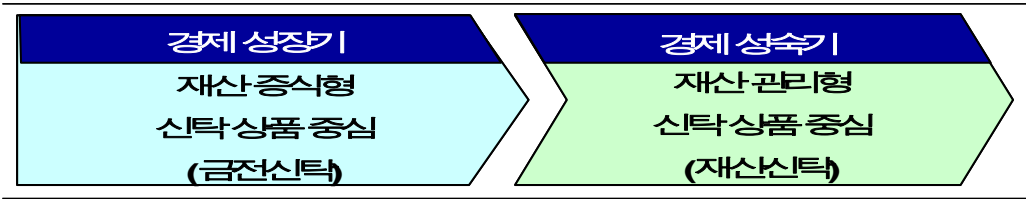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통한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4)</sup>.

일본에서 활성화된 신탁상품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고 해서 판매가 확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개발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 <그림 7> 신탁상품 개발의 트렌드

3) 하나은행에서 내리사랑신탁(유언신탁)을 판매하고 있으나 1건 판매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4) 신한은행에서는 회계사를 외부에서 고용해 신탁상품의 세제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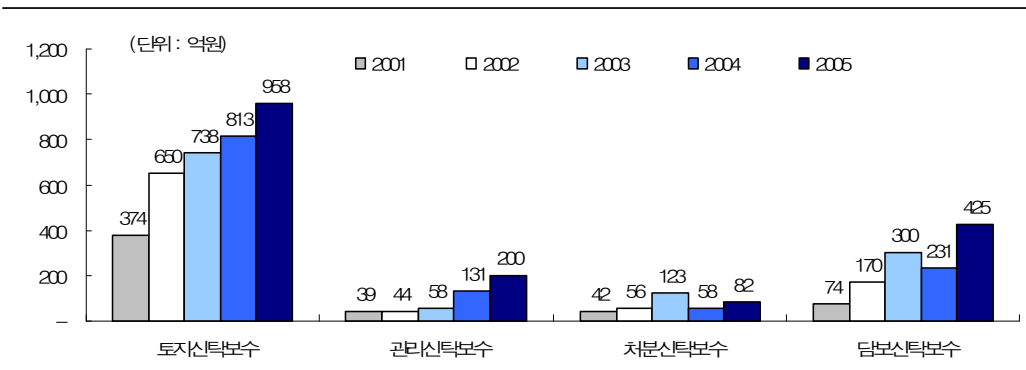
## 5. 부동산 신탁과 퇴직연금을 공략

금전신탁 중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퇴직연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본래의 신탁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신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자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ABS발행 등 부동산의 유동화 비즈니스에서 신탁은 부수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한 입찰 능력제고는 신탁비즈니스와 직결된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부동산신탁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sup>5)</sup>.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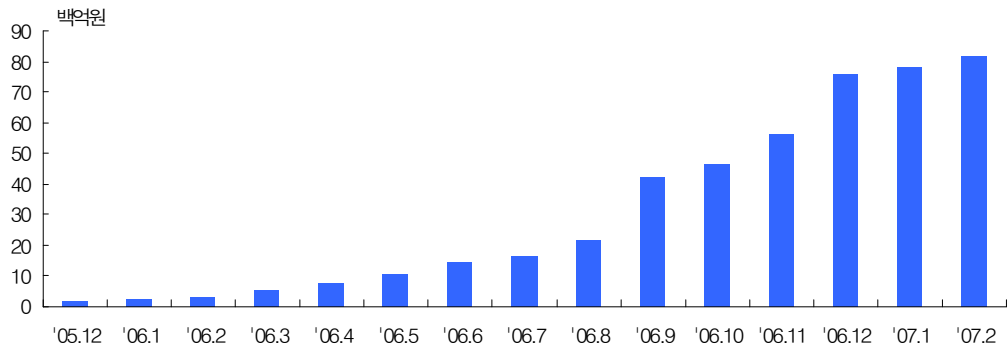
<그림 8> 부동산신탁 상품별 성장추이



자료 : 각사(한국토지신탁의 5개사) IR 자료

<그림 9> 퇴직연금 월별 적립금 추이

5) 부동산 신탁 상품 4개(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모두 인가는 받았으나, 금감원의 지시사항에 의해 담보신탁만 가능한 실정



자료 : 금융감독원

## 6. PB사업과 연계한 신탁업 활성화

부유층의 재산관리컨설팅에 신탁상품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신탁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B들의 부유층 상담 시 개인의 재산 관리, 처분, 증식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소개하도록 신탁사업단과 긴밀한 상호연계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고객 대상 상품마케팅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신탁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자산관리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전문가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시스템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하다.

국내 신탁업 담당 직원들과 함께 PB들이 일본 은행들을 방문해 상품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부유층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부유층 고객을 위한 투자세미나와 기업대상 퇴직연금 세미나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MMT(Money Market Fund)와 같은 상품은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sup>6)</sup>.

추가적으로 국내 은행의 신탁부에서는 PB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PB를 위한 상품을 설명해 신탁에 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 7. 신탁운용인력의 효율적 관리

6) MMT는 MMF와 같은 단기자금의 운용상품으로 펀드가 아닌 신탁상품으로 MMF의 익일 환매제 시행으로 인한 대체 상품으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MMT는 시중 콜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 동시에 지준율 인상으로 지급준비금을 맞추는데 힘든 은행에 단기자금의 공급선 역할을 담당함.

자본시장통합법이 시작되면 금융투자회사와 신탁운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하다. 지금까지 은행은 신탁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면서 신탁업 전문인력의 유출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가 본업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경우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제2금융권 특유의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이용한 인력 스카우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당행도 전문인력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리스크에 노출된다<sup>7)</sup>. 따라서 장기간 축적하여온 신탁업의 노하우 및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고 신탁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사 및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은행의 신탁부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즉, 잦은 부서이동은 신탁업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낮추고 신탁관련 제도나 상품에 대한 적응과 교육에 시간이 소요하다. 따라서 신탁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신탁부의 장기근로자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7)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에 대해 운용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손상호, 『은행신탁제도 발전방향』, 금융연구원, 2000
- , “자본시장통합법(안)의 가능성과 한계”, 주간 금융브리프 15권 24호, 금융연구원, 2006
- 오성근, “일본에서의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투신 제61호, 자산운용협회, 2007. 2
- 이병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은행신탁업의 발전방향”, 월간금융, 전국은행연합회, 2006. 12
- 이석환, “투자신탁 수익권의 특징과 보호관계”, 투신 제58호, 자산운용협회, 2006. 8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 12
- 전국은행연합회, 『일본의 신탁은행제도』, 1998
- 정승원, 국내외 신탁업 동향 및 시사점, 삼성금융연구소, 2004. 2
- 한상일, “제정 자산운용법의 주요 내용과 은행신탁” 금융연구원, 2003. 3
- 신탁업법, 신탁업감독규정, 신탁업감독시행규칙, 금융감독원

### [외국 문헌]

- Ackermann M, “Sizing up shifts in trust biz market share”, *American Bankers*, 2003.3
- Fraser K, “New rivals in trust business : nonbanks with thrift charters”, *American Bankers*, 1998.2
- , “Merrill Lynch using thrift charter to build its personal trust business”, *American Bankers*, 1998.10
- James D. Cox · Robert W. Hillman · Donald C. Langenert,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Aspen Publishers, 5th ed., 2006
- Larry D. Soderquist · Therease A. Gabaldon, *Securities Law*, Thomson West, 6th ed., 2006
- Monty P, *Trust Operation*,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2000
- Stoneman B, “To retain high-net-worth clients, bank need to offer a wider range of non-proprietary products”, *BAI Banking strategies*, 2002.11
- 北瀬 啓治, “アジアでの信託業務の可能性”, 日本商工會議所, 2004.8
- 三菱信託銀行信託硏究會, 信託の時代, 1991
- 田村 威, 投資信託基礎と實務, 經濟法令硏究會, 2006.9
- 田邊 昇, 投資信託制度の本質, 大藏省財政金融硏究所, 1995
- 山本 和尋, “信託と信託商品の特徵”, 郵政硏究月報, 2000. 1 0
- 土生 哲也, “知的財産信託制度の概要と將來展望”, 特技懇, 2006.2

高橋 康文、『詳解 新しい信託業法』、第一法規、2005  
能見 善久、『現代信託法』、有斐閣、2004  
永田 俊一 編、「信託改革—金融ビジネスはこう変わる」、日本経済新聞社、2005  
信託協會、日本の信託、2003  
信金中央金庫 総合研究所、新信託法を活用した事業承継 資産管理手法と信託ビジネスへの期待、2007.2  
新井誠、『信託法』、第2版、有斐閣、2006  
神井 裕之、「資産流動化と信託」、ジュリスト1164号、有斐閣、1999  
<http://www.fdic.org>  
<http://www.shintaku-kyokai.or.jp>

---

Abstract

## A study about development idea of domestic bank trust business

- Mainly on Japanese growth example analysis -

Yoon-Seok Seo\*

Domestic trust industry greets a new turning point by a capital market unification law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aging. I become it at the opportunity when such situation develops various articles in trust business and can give profit, but rather a market can be shortened by deepening of competition. Meanwhile, the domestic trust business that greeted a turning point grew up as an assistant of the bank reception, but development is postponed by regulation of a system. On the other hand, it revises law recently, and Japan plans development and develops various trust articles and grows up.

Taxation system improvement such as Japanese deregulation it must consist earlier to develop domestic trust industry. I develop the new article which positive business of company trust and general property trust is necessary, and seem to be a distribution figure product every month, and supplement of a system must consist together. You must concentrate an ability on real estate trust and the retirement annuity that growth possibility is high. I cooperate with PB and must introduce a trust article to asset management consulting of a customer positively. It strengthens education to improve with specialty of trust-related human power last and must guide long-term work.

■논문접수일 : 2007년 4월 10일, 논문심사일 :2007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5월 17일